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578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주식회사 (합병전: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6. 16.
판 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및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생략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중 별지1의 '취소청구액' 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다툼없음)

B 및 원고 C은 각기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B 및 원고 C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 3. 2. B을 흡수합병하여 B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우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별지1 (과세처분 내역)

피고	납세자	처분일자	세목	처분액(원)	취소청구액(원)
[redacted]시장	B 주식회사	2017. 9. 5.	재산세(토지)	184,643,870	50,000,000
			지방교육세	36,928,770	10,000,000
[redacted]시장	C 주식회사	2017. 9. 11.	재산세(토지)	556,424,460	100,000,000
			지방교육세	111,284,890	20,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별지2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이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골프장 운영주체로서는 그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인가 또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정책조세조항으로서 그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골프장 규제의 필요성, 회원 위주로 이용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의 제한적인 접근가능성, 사치·낭비 풍조 억제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 골프장 조성비용 조달방법의 차이 등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인바,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